

보도일시	2022. 1. 26.(수) 조간 *인터넷 2022. 1. 25.(화) 12:00 이후 / 총 3쪽		
담당기관	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직업건강팀	팀장 김 훈 차장 류관호	052-703-0620 052-703-062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kosha.or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 재해 예방대책 시행 안전보건공단, 설 연휴 전후 건설현장 현장점검 강화

- #1. 22.1.19. 대구시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장소를 출입하던 노동자 4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 이송,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
- #2. 22.1.14. 화성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저수조 바닥 미장작업을 하던 중,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한 숯탄으로 인해,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, 1명 부상

- 최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,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25일 질식재해예방 긴급대책을 발표했다.
 - 최근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(68.0%)은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.
 -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난로 등을 사용한다. 질식사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한다.
- 이에 공단은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‘현장점검의 날’을 맞이하여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질식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한다.

- 현장점검 시 갈탄 등을 사용한 양생작업 여부를 확인하고,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.
- 특히 지하층 골조나 저수조 내부 방수 등 질식 고위험 공사현장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.
-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사고사례를 전파하고,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자체점검표(붙임 참고)를 배포할 예정이며,
-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갈탄 난로 대신 열풍기 등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.
-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, “갈탄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험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으며, 뿌리 뽑아야 할 오랜 관행”이라며,
- “더 이상 겨울 콘크리트 양생 작업으로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만전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(끝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안전보건공단 김훈 팀장(☎052-703-062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보온·양생현장 질식사고예방 사업장 자체 점검표

- ☞ '콘크리트 양생작업'은 겨울철 질식사망사고에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. 갈탄, 등유 등 연료가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(CO)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~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 방해로 질식 유발함
- 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전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준 수 사 항	점검결과 (O/X)	비고
밀폐공간 확인 및 사전조치사항	우리 현장 내 콘크리트 보온·양생작업이 있다.		
	갈탄, 숯탄, 겔(Gel), 등유 등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. ※ 전기 열풍기 사용하면 안전합니다.		
	보온·양생작업장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.		
질식예방장비 보유	산소 및 유해가스(CO포함)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.		
	환기팬을 보유하고 있다.		
	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.		
	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(T.1644-8595)받는 절차를 알고 있다.		
안전조치사항	밀폐공간 출입 전,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. ※ 적정공기 ① 산 소 : 18.0 ~ 23.5% ② 황화수소 :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(이산화탄소) : 1.5% 미만 ④ 일산화탄소 : 30 ppm미만		
	출입 전과 작업 중에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한다.		
	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,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.		
	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.		
작업절차	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.		
	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한다.		
안전한 작업방법 교육	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. ※ 유해가스 측정, 환기설비 가동, 보호구 착용, 사고시 응급조치, 구조요청 절차 등		
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	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파악, 유해 위험요인 파악, 사전확인절차,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수립·시행하고 있다.		
	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정보, 작업자정보, 농도측정 및 조치, 누출·유입·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, 보호구, 비상연락 체계 등 사전 파악하고 작업장 주변에 게시한다.		